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2024. 4. 25. 보도자료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제 목 : 4월 선고 즉시보도 외 사건 보도자료

우리 재판소에서 2024. 4. 25.(목) 선고한 심판사건 결정요지 등 (즉시보도 외 사건 보도자료)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4. 4. 25.(목) 14:00 ~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붙임: 즉시보도 외 사건 보도자료 8건. 끝.

보 도 자 료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2020헌마10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위헌확인 등]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 등에 관한 인적사항 수집을 허용하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고, 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1항 제1호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각하]



2024. 4. 25.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2020. 4. 30.부터 5. 5.까지 연휴 이후 2020. 5. 7. 용인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감염자가 연휴기간 동안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이후 5. 15.까지 이태원 지역과 관련된 누적 확진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총 153명으로 늘어났다.
- 서울특별시장은 2020. 5. 12. 질병관리본부장¹⁾에 대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예방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공문을 보내어, 최근 수도권지역 지역사회 집단감염에 대응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염이 우려되는 장소를 방문한 사람들의 정보를 통신사 등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니, 통신사에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요청자료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지역 방문자 현황자료로서, ‘요청기간 2020. 4. 29. 20:00~ 5. 5. 08:00 (단, 5. 3. 20:00~5. 4. 08:00 제외)’, ‘제공요청정보: 해당기간 중 다음 업소 부근 기지국 접속자 정보 <날짜별 이름 및 전화번호> ○○(주소생략), 체류시간 (30분 이상)’, ‘회신처(동시 회신) 질병관리본부, 서울특별시청 질병관리과’였다.
- 이러한 요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은 2020. 5. 13.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에 대하여 위 내용대로 자료요청을 하였고, 위 전기통신사업자들은 2020. 5. 13. 질병관리본부장에게 ‘○○’ 부근 기지국 접속자 정보(날짜별 이름 및 전화번호)를 회신하였고,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를 서울특별시청에게 전달한 후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하였다.
- 서울특별시장은 위와 같이 회신 받은 정보를 토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독려하는 통지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2020. 5. 16. 19:00경 서울특별시를 나 타내는 '02-120' 번호가 발송한 MMS 문자를 수신하였고, 그 내용은 ‘4. 24. 부터 이태원 주변에 있던 분들에게 안내드리며,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의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는 것이었다.
- 청구인은 2020. 4. 29. 18:00경 이태원 지역 식당 및 주점에서 식사를 한 후 귀가했을 뿐, 위 코로나19 감염병환자가 방문하였던 클럽이나 인근 클럽을 방

1) 질병관리본부는 정부조직법 개정(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된 것)으로 2020. 9. 12.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었다.

문하지 않았음에도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개인정보가 수집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건당국 등이 2020. 5. 12. 기지국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처리한 행위와 그 근거조항인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등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 ① 2020. 5. 13.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자료 제공 수정요청’(중앙방역대책본부-3926) 공문으로 KT, SKT, LGU+ 전기통신사업자들에 대하여 ‘○○ (주소생략)’ 부근에서 2020. 4. 29. 20:00부터 2020. 5. 5. 08:00 (단, 5.3. 20:00~5.4. 08:00 제외)까지 기간 동안 체류시간 30분 이상인 기지국 접속자 정보(날짜별 이름 및 전화번호)를 질병관리본부 및 서울특별시청 질병관리과에 회신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수집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정보수집’이라 한다)와,
- ②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고, 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고, 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 결정주문

1.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고, 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정보수집 대한 판단 - 각하

-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이 사건 정보수집은 종료되었고 해당 정보 모두 파기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이 사건 정보수집은 코로나19가 신종 감염병으로 국내 유행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이후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는 등 코로나19에 관한 과학적 이해가 제고되어 유사한 내용의 정보수집이 반복될 가능성이 없고, 설령 유사한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그 개정조항의 현존으로 인한 것인바,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상, 이 사건 정보수집에 대해 별도의 심판청구 이익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특정 시간의 특정 기지국 접속자와 같은 조건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위치정보까지 함께 파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피청구인의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문제로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이므로, 위헌성의 문제가 아닌 위법성 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수집에 대한 판단이 헌법적으로 긴요한 사항이라고 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 기각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여금, 중

양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료기관, 법인이나 개인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적·경제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다. 그런데 신종 감염병의 경우 그 감염 경로, 증상 및 위험성,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방역조치의 형태, 범위, 강도 등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바,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방역조치를 보건당국이 전문적 판단재량을 가지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보건당국이 전문성을 가지고 감염병의 성질과 전파 정도, 유행상황이나 위험정도,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여부 등에 따라 정보 수집이 필요한 범위를 판단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대처를 통해 효과적인 방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여 그 목적 및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정보수집에 관한 사후통지 등 절차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나아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점에서 정보의 남용 가능성이 규제되고 있다.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한 처분이라도 행정권한 행사의 일반적 한계로서 보건당국은 구체적 사안에서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보건당국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감염병이 유행하고 신속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의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방역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인 손실 방지를 위하여도 필요한 것인 점에서 그 공익의 혜택 범위와 효과가 광범위하고 중대하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정보수집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피청구인이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이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아 판단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방역당국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당초 2015년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MERS-CoV) 유행 당시 보건당국의 초동대처가 미흡하고 효율적 방역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 헌법재판소는,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감염병 유행 상황에 적합한 방역 조치를 보건당국이 전문적 판단재량을 가지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하는 개별 정보수집 처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최초의 결정이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혐의 등 기소유예처분 취소사건

[2021헌마1174 기소유예처분취소]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진자가 참석한 종교행사 출입자명단 등에 대한 이 사건 방역당국의 제출요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내용, 방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감염병 예방법상의 '역학조사'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그 공범이 그 명단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명단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서 거짓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그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2024. 4. 25.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선교회가 운영하는 수련기관인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 소속 간사이고, 공범 조△△은 위 센터의 교육집행위원장, 공범 김◆◆은 위 센터의 선교사이다.
- 이 사건 센터는 2020. 11.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센터에서 ‘글로벌 리더십 역량개발’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위 행사 출입자 중 1명이 2020. 12. 3.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상주시는 2020. 12. 3. 조△△, 김◆◆을 상대로 위 행사 기간 이 사건 센터 시설에 출입한 자들 및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자들의 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 한다)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2020. 12. 16. 상주시장 명의의 이 사건 명단 제출 요청 공문이 이 사건 센터에 송달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① 조△△, 김◆◆과 공모하여 2020. 12. 3. 상주시장의 이 사건 명단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② 김◆◆과 공모하여 위 2020. 12. 17. 출입자 일부가 누락되어 있고 실제 출입하지 않은 사람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명단을 제출하여 역학조사에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역학조사 담당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청구인은 2021. 9. 15. ‘상주시장의 이 사건 명단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상의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거짓자료 제출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한편, 공범 조△△, 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노4509 판결).

□ 결정주문

피청구인이 2021. 6.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청 2021년 형제71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된 것)**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자
-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유의 요지

-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관련 법리**
 - 공범 조△△, 김◆◆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그 거부·방해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적 성격도 가진다.
 - 그러므로 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할 필요성 또는 긴급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학조사의 개념을 감염병예방법 관련 법령 문언을 벗어나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등 참조).

● 상주시장의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의 ‘역학조사’ 해당 여부(소극)

-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는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역학조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출 요구한 자료(명단)의 내용이 “감염병환자 등”의 인적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나, 상주시장 측이 제출 요구한 이 사건 명단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접촉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것이다.
 - 역학조사는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학조사서를 이용한 설문조사나 면접조사 방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방법에서 규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응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역학조사’를 거부하였다거나 ‘역학조사’에 거짓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역학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법령은 [별지]와 같음

● 청구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명단은 이 사건 센터 직원이 참석자들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등 이 사건 센터 측에 명단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그 내용이 허위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 결정의 의의

-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방법 제18조 제3항의 ‘역학조사’는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역학조사를 의미하고 그 해당여부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도7290 판결)에 따라 방역당국의 이 사건 명단 제출요구는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감염병예방방법상의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 피청구인은 적법한 ‘역학조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위 기소유예처분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였다.

[별지] 참고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이하 생략)
- **구 감염병예방법 시행령(2010. 12. 29. 대통령령 제22564호로 전부개정되고 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 4.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2016. 6. 28. 대통령령 제2727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 **구 감염병예방법 시행령(2020. 9. 11. 대통령령 제31013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의3] 역학조사의 방법(제14조 관련)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

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1)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는 감염병환자등, 이들과 접촉한 사람 및 같은 감염 위험요소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 설문조사지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역학조사서로 하며, 유행의 양상에 따라 역학조사반에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역학조사서는 해당 감염병의 감염경로 및 감염원을 규명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라) 설문조사지는 역학조사반원이 설문조사 대상자를 직접 면접하여 작성한다. 다만, 감염병환자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면접조사

가) 면접조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시설 또는 기관의 보건 위생 환경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 면접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보건 위생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 면접조사는 역학조사반원이 면접조사 대상자와 대면하여 실시해야 한다.

(이하 생략)

보도자료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사건

[2021헌마47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선 고]

헌법재판소는 1. 2024년 4월 25일 재판관 5(기각):4(인용) 의견으로, 청구인 강□□의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전부개정되고, 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은 유자녀의 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의 반대의견이 있다.

2.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 강○○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각하]



2024. 4. 25.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1. 청구인들의 아버지는 이혼 후 청구인들을 혼자 양육하던 중 1996. 7. 10. 자동차사고를 당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게 되었다.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위 사고로 후유증을 앓게 되어 숙모가 1년 남짓 청구인들을 양육하였고, 그 후에는 청구인들의 어머니가 청구인들을 양육하였다. 청구인들의 아버지는 2001. 12.경 뇌손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약 6년 뒤인 2007. 6.경 퇴원하였으나 2008. 12.경 사망하였다.
2. 청구인들은 아버지가 2000. 3. 29. 유자녀(幼子女)²⁾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서 청구인들 명의로 신청한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각각 대출금 1,975만 원 및 2,475만 원을 그들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3. 청구인들은 30세가 되어 위 대출사업에서 정한 상환기간이 개시되자, 자신들이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대출을 신청한 것이므로 자신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대출금이 자신들을 위해 사용된 적이 없는 등을 이유로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내지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를 위한 생활자금 대출 및 상환의무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구 ‘자동차사고 유자녀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2조, 제25조에 대하여 2021. 4.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대출신청자(법정대리인) 아닌 유자녀에게 부과하는 부분의 위헌성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조항 중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 그리고 구체적인 상환방법과 연체 시 지연배상금의 이율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 예규 규정인 구 ‘자동차사고 유자녀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2조, 제25조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

2) 유자녀의 의미: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로, 18세 미만(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경우에는 20세 이하인 자 포함)의 자이다.

령령 제16463호로 전부개정되고, 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자녀의 경우에는 생계유지 및 학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전부개정되고, 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 ①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유자녀의 경우에는 생계유지 및 학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또는 장학금의 지급

결정주문

1. 청구인 강○○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강□□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의 요지

● 적법요건(청구기간) 준수 여부 - 일부 청구인 소극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헌재 2020. 12. 23. 2017헌마416 참조). 다만, 그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7. 19. 2001헌마335 참조).
-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위 대출을 신청할 당시 청구인들은 만 9세, 만 8세였으므로, 그 당시에 상환의무의 존재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 그러나 청구인 강○○는 2020. 10.경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았던 돈이 무상지원이 아닌 대출금이라는 사실 및 채무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청구인 강○○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 반면, 청구인 강□□은 2021. 1. 27.경에 비로소 그 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그보다 전에 자신의 계좌로 지급된 생활자금이 대출금이었음을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 강□□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 **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 소극**

- 국가는 헌법 제36조 제1항, 제34조 제4항에 따라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유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로서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1. 12. 23. 조약 제 1072호, 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및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에 속하는 집단이고, 국가가 아동에 관한 복지정책을 실시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존재한다.
- 심판대상조항이 상환의무를 부과하는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유자녀가 향후 독립적인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인 30세 이후에는 자금을 회수하여,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사업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들이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책임보험료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이상, 재원이 고갈될 경우 신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 유자녀는 이러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별도로 국가에서 마련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자녀는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므로 구 생활보호법이나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종 생계 의료 등의 급여 제도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이 유자녀에게 상환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은 유자녀에게 대출금이 지급되며, 이는 유자녀의 생활 곤란을 위해 사용될 것이 예정된 금전이

기 때문이다. 대출신청자인 친권자 내지 후견인(이하 약칭할 경우 ‘법정대리인’이라 한다)은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본인 내지 그의 배우자이면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정되므로, 대출신청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 실제로 만기에 도달하여 상환의무가 개시된 대출금이 회수되는 규모는 상환대상금액 대비 약 50%에 불과하였던 시기(2010년대)도 있었으나, 근래에 들어와서는 상환대상금액 대비 미수금이 약 8%(2023년 9월) 정도로 근소한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대출 제도를 마련할 당시 전제하였던 유자녀의 잠재적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가 현저히 부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대출을 신청하는 자는 친권자 내지 후견인인 반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유자녀로서 이러한 이원화구조를 취함에 따라 법정대리인과 유자녀 간의 이해충돌이라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이유로 생활자금 대출 사업 전체를 폐지하면, 대출로라도 생활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유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될 수 있다.
- 이를 비롯하여 유자녀에 대한 적기의 경제적 지원 목적 달성 및 자동차 피해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중요성, 대출 신청자의 이해충돌행위에 대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각종 일반적 구제수단의 존재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 강□□의 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평등권 침해 여부 - 소극

- 자동차사고를 당한 본인인 중증후유장애인과 그의 가족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은 모두 가족관계에 있으면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겪는 자임은 동일하나, 잠재적 상환가능성에서 차이가 있다.
- 유자녀는 비록 대출금이 지급되는 시기에는 아직 18세 이하의 아동으로서 상환능력이 없었으나, 30세에 도달하고 나서부터는 장애 등을 입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상환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집단이다.
- 반면, 중증후유장애인, 피부양가족(65세 이상의 고령인 사람으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인 사람)은 각각 상환능력이 없는 상태가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재원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잠재적으로나마 상환능력이 장래에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자녀에게는 상환의무 있는 형태인 대출로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중증후유장애인과 피부양가족에게는 상환의무가 없는 재활보조금 생계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유자녀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 헌법은 제34조 제4항에서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6조 참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그리고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서문 참조).
- 아동의 부양과 양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권리와 의무이지만, 국가에게도 아동의 부양과 양육에 대한 과제와 의무가 있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참조). 그렇기에 빈곤 등으로 부모에 의한 아동의 양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하여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국가의 아동에 대한 책임은 간과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 유자녀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자신에 대한 양육 비용을 국가에게 상환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자금을 지원받는 것인바, 이는 국가가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되어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사업을 하는 셈이고, 이는 앞서 본 국가의 아동에 대한 부양과 양육의 책임과는 조화될 수 없는 것이다.
- 비록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상의 구제수단을 통해 유자녀가 손해를 보전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머무르고 실제로 돌려받을 현실적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어 유자녀의 실질적인 구제방안으로는 미흡하다.
- 국가의 재정여건이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공백을 정당화할 수 없다. 유자녀의 생활자금까지도 무상지원함으

로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 실제로 고갈된다면 국가는 책임보험료의 징수율을 인상하거나, 세금 등의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등으로 대처하여야 함에도, 국가가 이와 관련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하다.

- 따라서 부 또는 모에게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생계유지 및 학업에 도움이 필요한 유자녀의 양육과 부양에 필요한 비용을 유자녀를 채무자로 한 대출로 지원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유자녀의 아동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에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의 대출 신청으로 인하여 아동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받은 대신 성인이 된 30세 이후, 자신이 신청하는데 관여하지 않은 대출의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문제되었다.
- 이렇게 생활형편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무상의 보조금이 아닌 대출형태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기본권이 문제된다. 특히 유자녀는 물질적 생존뿐 아니라 인격발달을 위한 보호가 요청되는 등 특별한 집단인 ‘아동’(18세 미만의 자)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다만, 법정의견은 유자녀에 대하여 적기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자동차 피해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자녀 대출 상환의무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하는 대출사업은 국가의 아동에 대한 부양과 양육의 책임과는 조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금의 상환의무에 관하여 심리한 첫 사건이다.

보도자료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관련 사건

[2020헌마542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①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 ②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조항 및 ④ 피청구인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결정에는 위 시행령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과잉금지원칙 위반), 위 시행규칙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재판관 2인의 기각의견, 위 시행규칙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4인의 인용의견(법률유보원칙 위반) 및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3인의 각하의견이 있었고, 또한 위 피청구인의 보관·이용등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법률유보원칙 위반)이 있었다. [기각]



2024. 4. 25.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1은 2020년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급받았으나 발급신청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2는 2002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 청구인1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별지 제30호 서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경찰서의 지구대장 등에게 보내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대하여, 청구인2는 피청구인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된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2020.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1. 7. 20. 법률 제18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본문 중 ‘지문(指紋)’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②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2019. 2. 8. 대통령령 제29511호로 개정되고, 2020. 10. 13. 대통령령 제31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③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09. 3. 10. 행정안전부령 제67호로 개정되고, 2023. 1. 12. 행정안전부령 제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1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④ 피청구인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청구인2의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보관등행위’라 한다)가 청구인2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1. 7. 20. 법률 제18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②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2019. 2. 8. 대통령령 제29511호로 개정되고, 2020. 10. 13. 대통령령 제31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³⁾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09. 3. 10. 행정안전부령 제67호로 개정되고, 2023. 1. 12. 행정안전부령 제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를 다음 달 5일까지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3) 해당 서식의 지문날인란은 아래와 같다.

왼손 회전 지문 (각 필자의 크기: 가로 4cm × 세로 3cm)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첫째(엄지) 손가락	
오른손 회전 지문 (각 필자의 크기: 가로 4cm × 세로 3cm)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첫째(엄지) 손가락	
왼손 엄지(평면)	왼손 네 손가락 평면 (필자 크기: 가로 7.4cm × 세로 5.6cm)		오른손 네 손가락 평면 (필자 크기: 가로 7.4cm × 세로 5.6cm)		오른손 엄지(평면)

□ 결정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청구인1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규칙조항은 청구인이 발급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송부하도록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마찬가지로 청구인1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때 발생한다. 청구인1의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어 적법하다.

○ 종래 이 사건 규칙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시행규칙 조항에 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반대하는 취지의 재판관 3인의 각하의견 있었음

●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보관등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의 선례

- 헌법재판소는 2005. 5. 26. 99헌마513등 결정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제2항 본문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의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이라고 특정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5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의 서식을 정하면서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또한 2015. 5. 28. 2011헌마731 결정에서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 20741호로 개정되고, 2011. 8. 29. 대통령령 제2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부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문정보는 일반적인 개인 정보와는 달리 생체정보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일 뿐, 종교, 학력, 병력, 소속 정당, 직업 등과 같이 정보 주체의 신상에 대한 인격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평가가 가능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아니하므로, 그 자체로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단절된 독립적인 정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유전자정보와 같은 다른 생체정보와는 달리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워 수권법률의 명확성이 특별히 강하게 요구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99헌마513등 결정의 이유는 그대로 타당하고,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선례 변경의 필요성

- 위와 같은 선례들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위 선례들이 적시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조항들은 법률개정에 따라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주민등록법 제24조 등), 이 사건에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보관등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의 선례

- 헌법재판소는 2005. 5. 26. 99헌마513등 결정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6호는 컴퓨터에 의하여 이미 처리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기 이전의 원 정보자료 자체도 경찰청장이 범죄수사목적을 위하여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경찰청장은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보유할 권한도 갖고 있으며, 여기에는 물론 지문정보를 보유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는 위 법률 제5조, 제10조 제2항 제6호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밖에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2항 본문, 제17조의10 제1항,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도 근거하고 있다. 경찰청장은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를 허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자신이 업무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전산화할 수 있고, 지문정보의 보관은 범죄수사 등의 경우에 신원확인을 위하여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의 법률적 근거로서 거론되는 법률조항들은 모두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의 법률적 근거로서 유효될 수 있다.』 고 하여,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선례 변경의 필요성

- 위 선례가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의 법률상 근거로 든 법률조항들은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2항 제7호,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제26조 제1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여전히 그 내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관등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선례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보관등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법률조항,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보관등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 헌법재판소는 2005. 5. 26. 99헌마513등 결정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 및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모두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는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어 지문정보의 수집 보관 전산화 이용이라는 넓은 의미의 지문날인제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문정보의 수집 보관 전산화 이용을 포괄하는 의미의 지문날인제도(이하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라 한다)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가 범죄자 등 특정인만이 아닌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도록 한 것은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 범죄자 등 특정인의 지문정보만 보관해서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신원확인기능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점, 개인별로 한 손가락만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손가락 자체 또는 지문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정확성 면에 있어서도 열 손가락 모두의 지문을 대조하는 것과 비교하기 어려운 점, 다른 여러 신원확인수단 중에서 정확성 간편성 효율성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현재까지 지문정보와 비견할만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는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경찰청장이 보관 전산화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범죄수사활동, 대형사건사고나 변사자가 발생한 경우의 신원확인, 타인의 인적 사항 도용 방지 등 각종 신원확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는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결국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헌법재판소는 또한, 2015. 5. 28. 2011헌마731 결정에서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 20741호로 개정되고, 2011. 8. 29. 대통령령 제2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99헌마513등 결정의 이유는 그대로 타당하고,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일반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나, 그렇지 않은 정보들은 다른 위험스런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연결자 역할을 하거나, 다른 개인정보들과 결합함으로써 개인의 전체적 부분적 인격상을 추출해 내는 데 사용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언제나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하기 어렵고, 지문정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자체로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 지문정보가 다른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로 사용될 수 있어 새로운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이 크고, 지문정보는 구체적인 범죄수사를 위해서 뿐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예방 등을 빙자하여 특정한 개인에 대한 행동의 감시에 남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지문정보가 위와 같은 연결자로 이용되거나 개인 행동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지문정보와 달리 유전자정보는 개인의 현재 건강상태와 과거 병력 등을 포함한 생체정보로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내밀한 사적 영역에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여 그 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위험이 매우 높아 제한적으로만 그 수집이 허용되고, 그에 따라 신원확인을 위해 비교할 수 있는 수집 보관된 정보가 지문정보에 비해 훨씬 부족하여 유전자정보의 신원확인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은 아직까지 지문정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 결국 선례의 결정 이후 신원확인수단에 대한 과학기술의 꾸준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하고 현재로서도 간편하고 정확하며 효율적인 신원확인수단으로 지문정보에 상응하면서 보다 덜 기본권 제한적인 수단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과의 관계 및 선례 변경의 필요성

-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2005. 5. 26. 99헌마513등 결정과 2015. 5. 28. 2011헌마731 결정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같은 내용의 구 시행령조항 및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위 99헌마513등 결정과 2011헌마731 결정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판단되지 아니하였으나, 선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이 사건 보관등행위는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어 지문정보의 수집·보관·전산화·이용이라는 넓은 의미의 지문날인제도를 구성하는 것이어서(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이 사건 보관등행위의 법률상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또한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의 지문날인제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열 손가락 지문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기본권 제한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보관등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선례의 설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 청구인들은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지문정보의 복사가 가능하므로, 지문정보의 악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해당 기술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문정보를 사용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위험성에 관한 것으로,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7조는 주민등록증의 서식 등을 규정하면서, 주민등록증의 재질과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2020. 1. 1.부터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의 복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정보의 부정사용 가능성은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위 선례들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보관등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1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 사건 보관등행위는 청구인2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판단

(가)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의견

○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는 주민의 거주관계 파악 및 행정사무의 적정, 간이한 처리라는 주민등록제도 일반에 관한 입법목적 외에도 치안유지나 국가안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된 것이고, 이러한 입법목적에는 날인된 지문의 범죄수사목적상 이용도 포함된다. 즉, 주민등록법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으로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2항 제7호의 규정내용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을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이 사건 규칙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규칙조항은 치안유지 및 국가안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열 손가락의 지문이 날인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하고 있는바 그 목적이 정당하고,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어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 경찰이 범죄수사나 사고피해자의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지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그 방법은 구체적 사건에서 채취한 지문과 경찰이 미리 수집하여 보관 중인 지문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경찰이 사전에 광범위한 지문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방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사진·유전자·홍채·치아 등과 같은 신원확인수단에 비하여 지문정보는 정확성·간편성·효율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보다 우수한 신원확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주민등록증에 개선된 보안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정보의 부정사용 가능성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규칙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소결

-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규칙조항은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1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형식의 인용의견

- 지문은 개인의 고유성과 동일성을 나타내는 생체정보로서 한 번 생성되면 사망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개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정보이므로 함부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고, 따라서 지문정보의 수집 보관 이용 등을 규정하는 법률의 경우 그 주체, 목적, 대상, 범위 등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그 해석 또한 엄격하게 하여 지문정보의 수집 범위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제2조 제1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은 시장·군수·구청장과 독립된 기관이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신의 사무인 주민등록에 관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별도의 기관인 경찰청 소속의 경찰서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송부하는 행위는 기관 내부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법률

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주민등록법령은 주민등록 사무 내지 주민등록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권한을 경찰청이나 각급 경찰기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목적(제1조), 위 법률이 선언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들(제3조), 위 법률이 정보주체에게 부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제4조), 위 법률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수집·오용·남용 등의 폐해 방지 및 사생활 보호 시책의 수립 책무(제5조) 등 위 법률의 규정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수사기관에서 향후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전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상 지문정보를 모두 송부 받고 이를 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라고는 볼 수 없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범죄수사기관에서 어떤 수사대상자나 범죄혐의의 단서가 발견되어 수사상 필요한 경우 그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에 대한 소명과 함께 개인정보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 특정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경찰청장이 사전에 일반적으로 지문정보를 송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경찰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또한 경찰관의 일반적인 직무의 범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법률규정들이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범죄수사나 신원확인 필요성과 상관없이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상 지문원지를 송부 받아 보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규칙조항은 주민등록법,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아무런 근거 없이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1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다)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형두의 각하의견

- 우리는 청구인1의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하기에 앞서, 이 부분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생각한다.
- 헌법재판소는 2005. 5. 26. 99헌마513등 결정에서, 이 사건 규칙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1999. 7. 24. 행정자치부령 제59호로 전부개정되고, 2008. 2. 22. 행정자치부령 제42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이하 ‘구 규칙조항’이라 한다)의 경우, 지문날인을 거부하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선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중정족수라는 형식적 요건 외에도, 선례의 판단에 법리상 잘못이 있다거나 사정변경이 있다는 등 선례의 입장을 변경해야만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의 이념에서 보았을 때 선례의 입장을 변경해야만 할 필요성, 즉 사회제도나 문화의 변화, 국민의 법감정 또는 의식의 변화, 다른 법률의 내용이나 그에 관한 법리 변경 등과 같은 규범상태 또는 사실상태의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선례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이 논증되어야 한다.
- 이 사건 규칙조항은 열 손가락의 지문이 날인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전제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열 손가락의 지문이 날인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접수된 때에 비로소 문제된다. 따라서 청구인1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날인하는 것을 거부하여 위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상 위 청구인의 지문정보가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송부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청구인이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청구인이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한 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장래 확실히 예측된다고도 볼 수 없다.
- 그렇다면 지문날인제도를 다투며 지문날인을 거부한 청구인1에게는 이 사건 규칙조항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의 법리는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타당하고, 이러

한 법리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선례를 변경할만한 규범이나 사실상태의 변경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1의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재판관 김기영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주민등록법은 제1조에서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치안유지나 국가안보를 입법목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고, 또한 주민등록증에 지문정보를 수록하도록 한 것이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치안유지, 국가안보 내지 범죄수사라는 목적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입법목적이 될 수 없다.
-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입법목적은 정확한 신원확인을 통해 행정사무를 적정히 처리하는 한편,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 서로 다른 인물 사이에 지문이 동일한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열손가락 지문 전부가 아니더라도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행정목적에 위한 신원확인에 사용되지도 않는 불필요한 지문들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찍도록 하고 있다.
- 행정상 목적으로 지문정보가 사용되는 경우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만으로는 정확한 신원확인이 어렵거나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과 같이 간이하면서도 정확한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의 신원확인에 열손가락의 지문정보가 모두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실제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무인민원발급기, 여권의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의 경우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는 양 손 엄지손가락 지문만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열손가락 지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열손가락 지문 모두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목적에 위한 신

원확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한 것이다.

-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주체가 신원 확인 등과 같은 필요에 의하여 사전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스스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고,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을 강제할 것은 아니다.
- 설령 범죄수사 등 치안유지의 목적을 위한 지문정보의 수집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입법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마찬가지로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을 강제할 것은 아니다.
- 이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된다.

● 소결론

-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1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형식의 이 사건 보관등행위에 대한 반대의견

- 앞서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형식의 인용의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칙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므로, 피청구인이 지문정보를 취득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지문정보의 취득을 전제로 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보관등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2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는데, 그 분포는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고, 다만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등에게 보내도록 하는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해서는 재판관 6인이 이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하다는 의견이었으나 이 사건 규칙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었고(기각의견 2, 인용의견 4), 최종적으로 기각의견 2, 인용의견 4, 각하의견 3이 되어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 피청구인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된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이 사건 보관등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고, 다만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참고: 심판대상조항별 주문에 관한 의견]

재판관 구분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이 사건 법률조항 (전원일치)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기각
이 사건 시행령조항 (8:1)	기각	기각	기각	인용 (과잉금지)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기각
이 사건 규칙조항 (2:4:3)	각하	각하	기각	인용 (법률유보)	인용 (법률유보)	인용 (법률유보)	각하	기각	인용 (법률유보)
이 사건 보관등행위 (5:4)	기각	기각	기각	인용 (법률유보)	인용 (법률유보)	인용 (법률유보)	기각	기각	인용 (법률유보)

- 헌법재판소는 2005. 5. 26. 99헌마513등 결정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조항 및 경찰청장의 지문정보 보관·이용 등 행위가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2015. 5. 28. 2011헌마731 결정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조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결정은 기존 선례들의 위와 같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다만, 위 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결정은 이 사건 청구인1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이 사건 규칙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조항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었는데, 이 결정은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청구인1의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함으로써, 위 99헌마513등 결정 중 일부를 변경하였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이 결정에서 처음으로 판단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보관등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선례의 판단을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원용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보관등행위와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보 도 자 료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유지·관리 기준 부재 사건

[2020헌마107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 위헌확인]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학교시설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으로서 운동장 바닥재 중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우레탄)에 대해서만 품질기준 및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2019. 10. 24. 교육부령 제19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의2 [별표 2의2]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2024. 4. 25.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2019. 4. 23.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을 ‘교사(校舎) 안’에서 체육장 등을 포함하는 ‘학교시설’로 확대하고, 학교의 장에게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였다(제4조 제1항). 이러한 법률 개정에 따른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2019. 10. 24. 개정 및 시행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① 체육장 등의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인증(KS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② 설치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의 파손 여부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였다(제3조 제1항 제1호의2 [별표 2의2] 제1호, 제2호).
- 청구인은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이하 ‘유해중금속 등’이라 한다)의 유지·관리 기준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2 [별표 2의2] 제1호, 제2호가 체육장 등의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바닥재 중 오직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에 대해서만 품질기준 및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마사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환경권, 보건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2019. 10. 24. 교육부령 제19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의2 [별표 2의2] 제1호, 제2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학교보건법 시행규칙(2019. 10. 24. 교육부령 제194호로 개정된 것)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舎塙

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 2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제3조 제1항 제1호의2 관련)

1. 체육장 등의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의 파손 여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국가는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이를 입법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학교시설에서 유해중금속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을 규정하면서도 마사토 운동장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 마사토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 보호를 위하여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중 심판대상조항 부분은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에 대해서만 유해중금속 등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을 두고 있으나 이를 그 밖의 다른 운동장 바닥재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차단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항과 관련 고시의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하여 유해중금속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학교보건법 제4조 제1항의 위임 취지에 비추어 가능하다.
- 토양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학교용지를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토양오염 대책기준상 1지역으로 분류하여 가장 엄격한 오염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학교용지의 토양 오염에 관하여 정화조치 등 토양환경보전법령상의 조치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으로 280개의 학교용지에 측정 지점을 설치하여 전국의 학교 용지 일반에 대한 상시적인 토양 오염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 교육부 산하 법정기관인 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현 한국교육시설안전원)가 발간하여 사실상 각급 학교 운동장 설치의 표준이 되고 있는 ‘학교운동장 바닥마감재 조성 및 유지관리 가이드’는 마사토 운동장 조성 현장에 재료 반입 시 반드시 유해중금속 등의 함유량 검사를 하도록 하고, 이후 토양 내 유해 요소의 함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 운동장의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어 학교장이나 교육감에게 학교 운동장의 유해물질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유해중금속 등의 검출 문제가 제기되었던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와 천연소재인 마사토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유해중금속 등 관리 기준으로써 규율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운동장 설치 과정에서의 오염물질 혼입 또는 외기로부터의 유해물질 유입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마사토의 속성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운동장 설치 공정상의 하자나 외부적 오염원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위험은 설치 공정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와 외부적 오염원에 대한 개별 규제 등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규율되어야 할 문제이며, 반드시 학교보건법령상의 규정으로써 이와 같이 학교 운동장에 생길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위험에 대비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 이상과 같은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에 마사토 운동장에

관한 기준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과소하게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국가는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학교시설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하면서 마사토 운동장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그밖에 ① 토양환경보전법에서 학교용지토양에 대해 가장 엄격한 오염 기준을 적용하고 정화조치 등 조치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②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으로 280개의 학교용지에 측정 지점을 설치하여 전국의 학교 용지 일반에 대한 상시적인 토양 오염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점, ③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마사토 운동장 조성 현장에 재료 반입 시 반드시 유해중금속 등의 함유량 검사를 하도록 하고 이후 토양 내 유해 요소의 함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 ④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 운동장의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어 학교장이나 교육감에게 학교 운동장의 유해물질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환경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설치업자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2020헌마108)에 대하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과 같은 날 각하 결정하였다.

보도자료

장교의 집단 진정 또는 서명 행위 금지 사건

[2021헌마125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장교는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중 ‘장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의 반대의견이 있다.



2024. 4. 25.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21. 8. 1. 단기법무장교로 임용되어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장교이다. 청구인은 군인이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청구인은 ‘장교’이므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1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5호 중 ‘장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1호로 제정된 것) 제31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법정의견의 요지

● 제한되는 기본권

- 심판대상조항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장교의 집단적인 표현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장교인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 소극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심판대상조항이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여 군의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은 제5조 제2항을 통하여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여야 하므로, 특수한 신분과 지위에 있는 군인의 집단행위에 대하여는 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 단순한 진정 또는 서명행위라 할지라도 각종 무기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집단행위는 예측하기 어려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이는 자칫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파괴하여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집단 진정 내지 서명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입장 차이로 반목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열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군과 같은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개별적인 진정 내지 이의제기 방식이 아니라,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과연 그 집단의 의사가 각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장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비취질 경우, 군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는 정파적 또는 당파적인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군 전체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즉,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체통에 따

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은 의견 건의나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도 있다. 그 외에도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을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역시 두고 있다.

- 이처럼 장교는 군대 내부의 절차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한 군대 외부의 절차를 통하여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해결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군인복무기본법에서 폭넓게 보호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제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

○ 법익의 균형성

-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군조직의 고도의 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고 장교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도록 하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기여한다는 공익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장교가 제한받게 되는 사익보다 작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

○ 결론

-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반대의견(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심판대상조항은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여 군의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고 이를 통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그 입법목적이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침해의 최소성

-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금지규정은 설령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서도 ‘군기를 문란하게 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 ‘그 목적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이 구성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안고 있는 위험성을 최대한 제거할 필요가 있다.
- 군무에 관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는 경우에서부터, 구체적인 위험성을 발생시키는 경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 규제 필요성은 개별적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만약 군무에 관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오·남용되어 집단으로 상관에게 항의하는 행위, 집단으로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복무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사유로도 이를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에는 장병들을 위한 병영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사항이나, 군대 내의 부조리 등을 시정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일률적으로 군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실제로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다.
-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자칫 정치운동으로 변색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그것이 장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합리적이고 건전한 비판인지 아니면 특정 정파를 지지하기 위한 수단인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만약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정치 운동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에 의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다.
- 군인복무기본법에서 의견 건의나 고충심사 청구 등의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

나,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군의 특성상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개별적으로 상관에게 건의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규정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설령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하여 의견 건의를 하거나 고충심사를 청구하더라도 이는 해당 사안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의 문제인 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군인복무기본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다른 방법들이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와 같은 정도로 실효성을 담보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킬 만한 것인지, 그 목적이 공익에 반하는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 법익의 균형성

-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핵심적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장교의 표현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며,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고 구체적이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 결론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이 장교인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 법정의견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군기를 문란하게 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점, 장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비추어질 경우 군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는 점, 군 전체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

심을 받을 수 있는 점,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이미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장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대하여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의 반대의견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그 위험성에 따라 개별적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에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군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군인복무기본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은 이미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오·남용될 경우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점, 군인복무기본법이 마련하고 있는 다른 방법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와 동일한 정도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장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장교의 지위와 역할, 집단적 표현행위의 특성, 군인복무기본법상의 다양한 권리구제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관하여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초로 판단한 사건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보도자료

광장 벤치 흡연 사건

[2022헌바16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위헌소원]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민건강증진법(2017. 12. 30. 법률 제15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2024. 4. 25.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9. 10. 11. 금연구역인 부산 해운대구 소재 벅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산 해운대구 보건소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20. 10. 23. 청구인에게 과태료 50,000원을 부과한다는 약식재판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11. 30. 과태료 50,000원을 부과한다는 정식재판 결정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0과10628). 청구인은 위 정식재판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22. 2. 16.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2라2016), 재항고하였으나 2022. 8. 9.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당해 사건).
-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위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6. 14. 기각되자(대법원 2022카기74), 2022. 7. 19.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2017. 12. 30. 법률 제15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건강증진법(2017. 12. 30. 법률 제15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조항]

국민건강증진법(2016. 12. 2. 법률 제14318호로 개정된 것)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

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6.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결정주문

국민건강증진법(2017. 12. 30. 법률 제15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공중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수 있는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흡연자 수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은 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기 전 국민건강증진법령이 규정하고 있었던 금연 흡연구역의 분리운영만으로는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되었다.
-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금연 흡연구역의 분리운영 등의 방법으로도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 특히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공간과 같이 공중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공장소의 경우 그 위험이 더욱 크다. 따라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외 없이 금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 심판대상조항은 특정 장소에 한정하여 금연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입법자는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해당 시설 소유자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건하에서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후문), 흡연자의 흡연권도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다.
-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흡연자는 일정한 공간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지만, 일반적으로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은 흡연자의 자유로운 흡연을 보장할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2004. 8. 26. 2003헌마457 결정에서 공중이용시설의 전체 또는 일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3. 6. 27. 2011헌마315등 결정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2014. 9. 25. 2013헌마411등 결정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 결정은 위와 같은 선례의 연장선상에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로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은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를 관철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보도자료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 가중처벌 사건

[2021헌바21, 37(병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원]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중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형법 제355조 제1항 중 횡령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2024. 4. 25.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인 회계관계직원으로서 국고를 손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 청구인들은 위 형사재판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 중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관한 부분 및 형법 제355조 제1항 중 ‘횡령’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1. 1. 14. 기각되었다.
- 2021헌바21 사건의 청구인은 2021. 1. 26.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 중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관한 부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1헌바37 사건의 청구인은 2021. 2. 15. 회계직원책임법과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고, 형법 제355조 제1항 중 ‘횡령’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중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라 한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1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카목(이하 ‘이 사건 회계직원책임법 조항’이라 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55조 제1항 중 횡령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형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
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1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
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정주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중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 규정된 사람
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의 죄
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
률 제951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카목,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

호로 개정된 것) 제355조 제1항 중 횡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조항 및 이 사건 회계직원책임법 조항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회계직원책임법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 업무를 전담하는지 여부나 직위의 높고 낮음은 불문함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사건 회계직원책임법조항과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의 보호법익은 타인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인데 반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보호법익에는 국가의 재물에 관한 재산권뿐만 아니라 국가 회계사무의 적정성도 포함되므로 보호법익이 서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회계직원책임법이 정하고 있는 회계관계직원, 즉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의 횡령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와 죄질이 동일하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대상인 1억 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일으키는 횡령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경제적 파급효과 크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형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형법 조항은 재물의 소유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재산범죄인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횡령행위를 하는 자기 영득과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횡령행위를 하는 제3자 영득은 모두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질과 보호법익이 동일하다.

이 사건 형법 조항이 자기 영득과 제3자 영득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횡령을 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형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이 사건에서는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한 회계직원책임법 조항, 위 회계관계직원이 국고 손실을 입힐 것을 알고서 횡령의 죄를 범하고 손실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특정범죄가중법 조항 및 이 사건 형법 조항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횡령행위를 하는 경우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횡령행위를 하는 경우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점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회계직원책임법 조항과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형법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였다.